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2
----------	------

제출년월일 : 2006. 2.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 시 발생하는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있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 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함

(안 제10조의 별표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부령”을 “규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하고,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을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로 한다.

제3중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가산한다”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부령”을 “규칙”으로 하며, 제2항제3호중 “건설교통부령”을 “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를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로 하며, “각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여 동조제1항중 “부령”을 “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하며, “종로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여 동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 과 기 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 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1제곱미터이내 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2호	3,000,000원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4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1위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 는 1제곱미터 이내 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 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 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제3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 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제4호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 ----- ----- “규칙”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④ (생략)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지방세법」 ----- -- 각 호의 어느 하나 -----.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성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생략)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4. (생략) ②(생략) 1.~2. (생략)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②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가산한다. ---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u>별표 1</u>----- ----- <u>별표 3</u>----- ②(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1. ----- ----- <u>규칙</u> ----- 2.~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 <u>규칙</u> -----

현행	개정안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u>[별표]의 {점용물의 종류}</u>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생략)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생략) ②<u>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u>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 (생략) ③<u>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u> 〈신설〉 〈신설〉	③----- -- <u>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u>----- ----- 각 호 ----- 1.~3.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현행과 같음) 〈삭제〉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사무위원 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종로구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 규칙 ----- ----- ----- ②(현행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 사무위원 조례」 ----- ----- -----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
제11조(세입구분) ①서울특별시사무위원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①「서울특별시 사무위원 조례」 ----- ----- ----- -----
제12조 (생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